

III. 최신환경단신

◎ 중·일 이산화황 감소기술 공동개발키로

일본 통산성은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돼 대기 오염과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SO₂) 등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일 보도했다.

통산성은 첫 사업으로 99년도부터 5년간 약 17억엔을 투입해 장쑤성의 한 발전소에서 비용이 저렴하고 조작성이 간단한 탈황장치의 설계 제작과, 탈황과정에서 나오는 석고를 재활용하는 기술 등을 중국측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통산성은 그동안 산둥성 등지의 발전소에서 탈유황장치의 실증실험을 해왔으나 적자에 허덕이는 중국 국유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저비용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에너지의 75%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약 2천 개 있으나 대부분 연기에서 이산화황성분을 제거하는 장치가 없어 중국의 이산화황 배출량은 연간 약 2300만t으로 일본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대기오염측정망 2000년 설치

2000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과 산업단지에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대기오염측정망이 처음으로 설치돼 대기오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도시지역과 휘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오존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등을 측정하는 광화학 평가측정망이 설치되고, 산성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성강하물질 측정망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4일 차량의 증가등으로 대도시의 시정이 악화하고 오존오염도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6종의 대기측정망외에 4종을 추가하는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05년까지 3백13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2백7개소의 대기측정망을 4백72개소로 확대하고 측정항목도 현재의 총먼지, 아황산가스 외에 ▲인체위해도가 높은 VOCs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납·카드뮴 등 중금속 ▲산성강하물질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염화불화탄소(CFC)등이 추가됐다.

또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시정거리와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정장애측정소가 새로 설치되고, 지구온난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FC 등 온실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지구대기측정소가 제주도에 신설된다.

◎ 경기도 수질오염 사고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름 및 유독물 유출 등 수질오염 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팔당호를 끼고 있는 경기도에서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수질보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112건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25.9%인 29건이나 일어났다. 경기도는 또 지난 95년에는 총 83건 중 14건, 96년 75건 중 15건, 97년 65건 중 16건으로 해마다 전국에서 수질오염 사고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기름유출이 65%로 가장 많았고 장마로 오염물질 유입이나 녹조현상 등 수환경 변화가 16%, 유독물 유출 5%, 축산폐수 유출 등 기타 13%로 나타났다. 또 원인별로는 기름밸브 등을 잠그지 않아 기름이 새어나오는 등 관리·취급 부주의가 32%로 가장 많았고, 기계고장 27%, 교통사고와 자연현상이 각각 16%, 기타 12%였다. 이밖에 수질오염 사고는 해마다 5~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불법폐기물 매립업자, 수자공에 167억원 배상”...서울고법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4일 공유수면 매립지에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는 바람에 이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운반비용, 오염토양 정화비용 등 1백6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토지를 매각하기 전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가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피고가 매립한 불법폐기물을 처리·운반하는데 드는 비용과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고 이 토양을 다른 곳에 매립하는 비용, 오염된 지하수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모두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토지가 있던 경기 안산시 사동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가 92년

3월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예정지에 포함되자 일반토지와 같은 높이로 매립할 경우 보상받기에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 인근 공단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1만8천여t을 불법매립한 뒤 토사로 덮고 이를 수자원공사측에 매각했다.

◎ 환경부,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 집중 육성 방침

앞으로 폐지, 폐유리 등 폐자원 재활용실적이 좋은 기업은 「우수재활용사업자」로 지정돼 저리의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재활용업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신규 재활용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특히 1만1천여개의 국내 환경업체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대형화를 추진하게 된다.

4일 환경부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재활용산업을 포함한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수질오염방지시설업 등 17개 업종 1만1천7백여개 업체의 전문화,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독자적인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 등 우수 환경업체를 환경산업 전문업체」로 지정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해 환경기술개발지원자금·환경산업화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폐지·폐유리·폐캔 등 폐자원 재활용 의무비율(폐지 55%, 폐유리 52% 등)을 상회하는 재활용실적 우수업체를 「우수재활용 지정사업자」로 지정, 저리(6.4%)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올 상반기에 개정, 내년부터 우수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내달에는 산하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재활용부문의 신규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오는 4~5월에는 재활용업체 기술지원을 전담할 「기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새만금 등 12곳 랍사 기준 국제 중요습지 확인

간척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하려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지역이 국제습지보호협약(람사협약) 기준으로 국제적 중요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의 습지 160군데를 대상으로 겨울철새 도래규모를 조사한 결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영향권에 드는 금강 만경강 동진강 지역을 포함한 전국 12개지역이 '국제적 중요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

다고 8일 밝혔다.

한 지역의 습지에 물새 2만마리 이상이 도래하면 람사협약의 '국제적 중요 습지'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금강지역에 도래하는 철새는 31종 10만여마리로, 전남 해남의 고천암호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만경강에는 12종 4만 5천여마리, 동진강에는 20종 2만1천여마리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확인된 중요습지 12곳 가운데 낙동강을 제외한 11곳이 서해안 지역으로 조사됐다.

● 대형공사 환경영향평가 강화

앞으로 간척·매립이나 다목적 댐 등 대형 건설공사를 추진하려면 사업시행 허가전 기본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환경적 요소가 면밀히 고려되도록 공항 개발사업등 7개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협의 요청시기를 실시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단계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따라 시행령 개정전부터 논란을 빚어온 강원도 영월동 강댐 건설문제의 경우, 기본계획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계속 보완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왔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계획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목적 댐, 하구둑, 하천공사 등은 공사시행 허가 전에, 새만금 간척과 같은 매립사업은 매립면허 전단계에 각각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또 저수지와 보는 시행계획 고시전에, 항만시설과 항만준설은 공사 고시 전에, 공항개발사업은 시행허가전에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어렵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전에는 댐건설이나 간척·매립 등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이 결정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입지 타당성이 없어도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공사 결정전에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 유화공장 등 악취시설에 벤젠 등 억제시설 의무화

수도권 지역 석유화학공장과 저유소, 주유소는 올해말까지 대기오염과 악취의 주원인인 벤젠, 부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17일 최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 3월중 이를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내 15개 도시 등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석유화학공장과 저유소는 올해말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새로 규제되는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과 지정폐기물 처리업종, 세탁소 등도 내년말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벤젠 부탄 휘발유 등 물질은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만들어 호흡기를 자극하고 가로수와 농작물에 피해를 주며, 오래 접촉할 경우 백혈병·간독성과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일으킨다.

● 방치 폐기물 차단 특단대책 마련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방치되는 폐기물이 늘어나자 환경부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작년 11월말 현재 방치 폐기물은 6만7천t 가량으로 지금은 정부가 대신 치워주거나 관리해주는 등 소요자금을 사실상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새로운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폐기물업체의 허가요건 및 보관기간 등을 조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오는 9월까지 각종 폐기물처리업종을 망라한 단일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업체가 부도를 내더라도 방치 폐기물을 조합이 공동으로 처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처리업체가 공제조합 가입 외에 ▲처리보증보험 가입 ▲이행보증금 사전예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지금은 환경위해 우려가 큰 지정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정부가 먼저 치워주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위해가 덜한 일반폐기물은 정부가 제3자인수를 유도하거나 오염여부를 관리하는 등 떠맡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처리업체의 폐기물 범정보관일이 '90일이내'로 너무 긴 점도 업체가 부도를 냈을 때 방치폐기물을 쌓이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고 이를 '30일이내'로 줄이는 한편 공제조합에 가입된 처리업체의 보관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 분담금을 적게 내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보관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